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3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3.8.16 일부개정, ‘24.2.17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달성군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복수대표자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후단)
- 나.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서명요청위임 절차 신설(안 제6조)
- 다. 청구인명부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 신설(안 제7조~제7조의2)
- 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9조의2)
- 마.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주민조례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권자”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로 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구의 취지”를 “청구조례명, 주요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의장은 선정 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대표자 전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을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표자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 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 이라 한다) 또는 각 그 사본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청구인명부)” 를 “(청구인명부 작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들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체류지를 포함한다),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및 군의회 게시판,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이의신청)” 을 “(이의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 정한다” 를 “을 준용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사무”를 “확인사무 등”으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라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 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 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위 청구조례안 1부 2.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 공동대표자용 서식 1부(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대표자용
[]청구·[]철회·[]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하고, 수임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 중 ○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팔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6. “서명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 쪽을 1쪽으로 하고, 2쪽부터는 해당란을 삭제하여 작성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

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선정)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변경 전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선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선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2. 공동대표자용 서식 1부(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 ----- ----- ----- 주민 조례청구----- -----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 달성군수(이하 “군수”----- ----- -----.
<신 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	② -----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
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신 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 등) -----

-----.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 전
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
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
(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 ③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의장은 선정
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

<신 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대표자 전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이라 한다) 또는 각 그 사본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 작성 등) ①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구권
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
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
에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법 제9
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
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성명과 주소(체류지를 포함한
다),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
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
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
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
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제출 등) ① 대
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
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② (생략)

<신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및 군의회 게시판,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제>

제9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

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신 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

----- 별지 제7호서식-----
-----.

② -----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

<신 설>

<신 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협조) -----

----- 확인사무 등-----

----- 경우 -----

-----, -----

-----.

<삭 제>

<삭 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4.2.17.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

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

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